

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	
번호	147

제출년월일 : 1993. 5.

제 출 자 : 속 초 시 장

1. 제 안 사 유

-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범위 근거조항을 개정 하고자 함.

2 주 요 골 자

-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범위 근거조항 개정 (안 제22조 참조)

"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1항"을 "지방재정법시행령 제35조제2항"으로 개정

3. 참 고 사 항

- 강권 법률 02124 ~ 98 ('93.3.24) 도로 정비안 시달 ————— 별 청

- 시정조정위원회 회의 '93. 4. 29

속초시 조례 제 호

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

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4호중 '영 제95조제1항' 을 '영 제95조제2항' 으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행	개정안
제 22 조 (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) 1 - 3 (생략)	제 22 조 (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) 1 - 3 (생략)
4. 영 제95조 제1항 제1호, 제2호, 제6호, 제8호, 내지 제11호, 제13호, 제14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 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	4. 영 제95조 제2항 -- -- -- -- -- -- -- --